

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제명

- 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고시 제2022-52호, '22.10.31.)

2. 개정사유

- 수입항 체선료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개선
-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
-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변경·철회·취소 절차 마련

3. 주요 개정내용

- 수입항 도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(§24)
 - 항해용선계약에서 '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'를 상법의 '하역준비 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'로 규정
 - 수입항에서 체선료, 도선료, 예선료,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
-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 (§45~§47)
 -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·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, 사전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이 수행
 -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
-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변경·철회·취소 절차 신설 (§49)

4. 규제대상 여부 : 해당 없음

5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6. 시행일자 : 2023. 2. 1.